

第304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2月30日(金)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7.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2.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0.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계속)
4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48. 씨름진흥법안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박보환·이철우·정희수·정해걸·김을동·최구식·정갑윤·이명규·박민식·이정선·배은희·이사철 의원 발의)(계속) ... 4
-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
- 3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
- 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 3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
- 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김재균·유선호·김창수·문학진·박우순·이찬열·전병헌·송훈석·김진표·홍재형·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4
- 3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노영민·주승용·강창일·김동철·양승조·박주선·장세환·전병헌·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4
-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5
- 4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
- 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
- 4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
- 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
- 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
- 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5
- 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
-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

- 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9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식·윤진식·김형오·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9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이명수·오제세·임영호·김낙성·김창수·변웅전·이영애·주승용·신낙균·조배숙·김성곤·강성천·안규백·신영수·이재선·권선택·유정현·류근찬·김재균·이낙연·박선영·정진섭·홍희덕·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9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9
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9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9
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9
1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0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1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종걸·양승조·유선호·전병헌·최종원·김재균·강기정·이춘석·조정식·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0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이애주·윤석용·유승민·이윤성·임해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김성동 의원 발의)(계속) 10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오제세·유성엽·김성곤·안민석·김영록·이용경·최재성·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0
1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0
17.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0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0
1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20.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0
22.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이경재·안홍준·안상수·이성현·강승규·김용태·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11
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이명수·이사철·노철래·조경태·신상진·김성동·김태환·정해걸·정미경·조진래·한기호·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운선·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11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김재윤·김학송·김부겸·조영택·유선호·김춘진·최규성·홍영표·백재현·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11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11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11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11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11
30.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운선 의원 대표발의)(조운선·유기준·원혜영·고홍길·이정선·이범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

홍사덕 · 조진형 · 나성린 · 박진 · 이한성 · 정두언 · 한선교 · 허원제 · 이철우 · 진성호 · 장광근 · 황영철 · 신성범 · 김성수 · 조전혁 · 이춘식 · 유일호 · 이은재 · 이사철 · 배은희 · 진영 · 임동규 · 최경희 · 이성헌 · 김금래 · 황진하 · 김장수 · 이정현 · 강명순 의원 발의)(계속) 11

4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3

48. 씨름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강승규 · 김성동 · 김세연 · 박보환 · 이경제 · 임해규 · 정해걸 · 정희수 · 조윤선 · 조전혁 · 주호영 의원 발의) 13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13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4

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4

5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4

5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4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4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우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마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보류하였던 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한 다음에 신규로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법률안 상정과 관련하여 국무위원 출석은 어제 심사를 한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해당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결한 법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학재 위원께서 언급하신 제6조제6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에서 ‘이 법 또는’을 삭제하기로 어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구 정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우윤근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59조에 의하면 체계 · 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일부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유를 감안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 · 박보환 · 이철우 · 정희수 · 정해걸 · 김을동 · 최구식 · 정갑윤 · 이명규 · 박민식 · 이정선 · 배은희 · 이사철 의원 발의)(계속)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3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주승용 · 김재균 · 유선호 · 김창수 · 문학진 · 박우순 · 이찬열 · 전병헌 · 송훈석 · 김진표 · 홍재형 · 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3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노영민 · 주승용 · 강창일 · 김동철 · 양승조 · 박주선 · 장세환 · 전병헌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38.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4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11시07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순서를 잠시 바꿔서 의사일정 제31항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39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를 듣고 대체토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어제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 대체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문제가 제기되어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어제오늘 모두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인천광역시장께서 나와 계신데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장관도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동의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전제로 저희 인천시는 MOU에서 약속한 대로 매년, MOU에는 매년 5년 동안 200억, 10년 동안 또 200억 해서 총 30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또 시의회하고는 매년 300억씩 지원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국가의 기본적인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원을 전제로 저희 시가 약속한 지원 금액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교과부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의 정신에 따라서, 또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해서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가 성사가 돼서 법인화될 경우에 교과부로서도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된 인천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朴俊宣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근** 박준선 위원님!

○**朴俊宣 委員** 송영길 시장님,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신 향후 200억, 300억씩 5년, 10년간 발전기금 조성하는 것 외에 MOU, 이게 지금 MOU인지 인천광역시에서 보낸, 인천대학총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 보면 그 내용 외에 도시개발공사에 출연한 대학발전기금(308억 원) 중 인천대 지분

(60%)에 해당하는 185억 원과 수익용 재산(토지 84필지) 969억 원을 불변가액으로 10년간 균등분할하여 반환, 그다음에 송도 4공구 우수지를 캠퍼스 부지로 추가 제공하고 송도 11공구 일부(10만 평+a)는 외국 유명대학과 R&D 기관 등의 유치에 구체화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에서 선례 및 타 대학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등 제정(법인화법 제정과 연계), 이런 MOU 내용은 이것은 다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것이지요?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리고 또 2009년 9월 10일자 공문을 보면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원계획 변경 통보’, 여기에도 기존 전문대 운영비 및 인천대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 1098억 원은 5년간 지원(변경 사항 없음), 대학통합지원금 270억 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3년간 균분하여 지원(변경사항 없음), 다, 대학발전기금 추가분 1214억 원은 통합 6년차부터 10년간 분할하여 지원(변경사항 없음), 구조조정 지원금 27억 원은 3년간 균분하여 지원(변경사항 없음),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산학협력 재정지원금(1000억 원)은 산학협력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통합대학 출범 1년 후부터 10년간 균분하여 지원(변경), 이 내용도 지금 인천시 입장은 유지하신다는 얘가지요?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계속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협의라는 것은 이미 인천……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지금까지 시행된……

○朴俊宣 委員 물론 지금 이 공문에도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법인화법을 지금 통과시키면서, 조금 전에……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성실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도 현재 사안들 자체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각 분야에, 도시개발공사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일부 하는 것 외에 지금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요청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46항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으로 하고, 확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정한 의견이 안 21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규정은 국유재산특례법 제4조와 충돌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 안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2006년 4월 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체결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법안 중에 의사일정 제39항 유통산업발전법, 장관님, 아마 농협 관계자하고 합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위원장 우윤근 먼저 지금 나와 계신 분이 농림부 차관이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차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농림부 1차관입니다.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농수산물의 특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신선 채소류라든지 수산물이나 육류 같은 경우에 휴무일을 강제하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일부 변질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보관 문제가 우려가 큼니다.

특히 대부분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농협매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물량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은 큰 문제가 없지만 휴무일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근** 지경부장관, 안을 받아들여서 합의 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농수산식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농림부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경위 위원님들과의 의견 합의는 제가 뭐라고 속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朴俊宣 委員** 지경위 위원 말고……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아니, 그러니까 지경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휴무일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이고요……

○**朴俊宣 委員** 그러면 됐지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농림식품부 입장은 농산물을 하루 쉬게 되면 부패할 염려가 있어서 쉬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 아닌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예, 소형매장은 내일이 휴무일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물량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로마트나 이런 것은 농산물 대부분을 취급하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부터 스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품질 저하 문제, 신선도 문제, 또 농산물 출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것을 정리하려면 또 그 내용에 관한 문제여서 지경위하고 최소한의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오후 4시로, 어차피 우리 법안을……

전문위원, 그거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수정의견이?

○**전문위원 문광섭**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우윤근**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恩宰 委員** 장관님, 지금 실제로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나라들 보면 휴일은 없고 365일 24시간제로 돌아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일제를 채택하려고 했던 배경이 뭐지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그것이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노동자들의 근로 보호, 휴일도 제공한다는 그런……

○**李恩宰 委員**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주 40시간이지요? 주 40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휴일날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사실 잘 지키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첫 번째 대의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대적인 소상공인 보호 효과도……

○**李恩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365일 24시간을 돌아가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유럽에서도 일부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러니까 스리 시프트(three shifts)로 하잖아요, 대개. 아침에 몇 시부터 하고 오후에 몇 시부터 하고 저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골목상권이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이게 휴일이 없을 경우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휴일을 좀 두자 이렇게 지경위에서 의결을 하신 것입니다.

○**李恩宰 委員** 이게 상당히 좀……

○**위원장 우윤근** 이두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두아 위원** 이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장관께서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김재경 지경위 간사께 전해들기로는 중업원의 건강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보호, 이런 부분인데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농협 얘기를 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 지경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상 못 했던 것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점포를 명확하게 용어 규정을 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 대규모 점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전해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농협은 그러면 신선도 문제가 있어서 빼고 그러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점포라든가 이런 우리가 생각 못 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부분 수정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시지요.

39항 법률……

○**이용희 위원** 얘기 좀 하자고요.

○**위원장 우윤근** 이용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용희 위원** 지금 하는 식으로 영업일수는 현행대로 업체별로 맡겨놓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장관도 아시다시피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3교대를 하든 4교대를 하든 해서 근로자들 다 건강도 보호하고 하는 것이니까,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어떻게 보면 선도가 생명인데 그런 거 하룻밤씩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돼요. 먹고 병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FTA 때문에 제일 피해 많이 입는 부

분이 농업 부분인데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나는 자율에 맡겨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거 인색할 것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저기……

○**이용희 위원** 그렇게 해요, 긴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딱부러지게 하고 치웁시다. 오후에 또 해 봤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농림부 차관 말 그대로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자고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식품위나 농민들의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농림부 차관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이 규정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내지는 복지 이런 것을 고민을 했던 요소가 있고, 또 부대적으로는 소상공인들도 고민한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경위 위원님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는 정도 이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하고도 협의했는데요,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지금 여야 원내수석이 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협의를 한답니다. 오후 4시에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야 수석끼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항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제35부터 제38항까지, 제40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李恩宰 委員** 잠깐만요, 43번도 들어가나요?

○**위원장 우윤근** 예, 들어갑니다.

○**李恩宰 委員** 43번이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어저께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우윤근** 체계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가 있었는데, 문광섭 전문위원님, 기초수급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법체

계에 맞는지, 그 문제를 이른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만 법체계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던가요?

○전문위원 문광섭 예.

○李恩宰 委員 이게 그래 가지고 어제 얘기가 복지부는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서로 의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저께 얘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의견을 뭐 받은 게 있나요?

○위원장 우윤근 법체계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에 위임하는 부분……

○전문위원 문광섭 지금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 기존 현행법은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보훈법상의 희생·공헌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이라든가 재정이 침해되고, 그래서 제고를 요청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자체의 시설운영권이라든가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위 규범인 조례이고 이법에서 특별히 그것을 정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일반규정·특별규정 간의 관계에 있다, 상위·하위 규정상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적극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른재 위원님, 어떻게…… 지금 2소위가 사실 현실적으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李恩宰 委員 사실 그렇지요. 거의 없지요.

○위원장 우윤근 큰 문제가 없으면 법안을……

○李恩宰 委員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위원장 우윤근 문제 제기는 아주 적절해 보이는데요 크게 없으면, 왜냐하면 2월 국회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개정안을 내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지요.

○李恩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5항부터 38항까지, 40항부터 4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항은 계속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과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법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식·윤진식·김형오·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이명수·오제세·임영호·김낙성·김창수·변웅전·이영애·주승용·신낙균·조배숙·김성곤·강성천·안규백·신영수·이재선·권선택·유정현·류근찬·김재균·이낙연·박선영·정진섭·홍희덕·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시27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1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어저께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1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실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한 내용대로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임금채불심의회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하

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종걸·양승조·유선호·진병헌·최종원·김재균·강기정·이춘석·조정식·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이애주·윤석용·유승민·이윤성·임해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김성동 의원 발의)(계속)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오제세·유성엽·김성곤·안민석·김영록·이용경·최재성·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7.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1시30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13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제2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9항, 제2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이경재·안홍준·안상수·이성현·강승규·김용태·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이명수·이사철·노철래·조경태·신상진·김성동·김태환·정해걸·정미경·조진래·한기호·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운선·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김재윤·김학송·김부겸·조영택·유선호·김춘진·최규성·홍영표·백재현·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30.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운선 의원 대표발의)(조운선·유기준·원혜영·고홍길·이정선·이범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홍사덕·조진형·나성린·박진·이한성·정두언·한선교·허원제·이철우·진성호·장광근·황영철·신성범·김성수·조진혁·이춘식·유일호·이은재·이사철·배은희·진영·임동규·최경희·이성현·김금래·황진하·김장수·이정현·강명순 의원 발의)(계속)

(11시32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22항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조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어저께 28항과 29항을 빼고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바로 의결을 하고 28항·29항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제3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이고 부대의견으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을 두고 게임사업자가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붙여서, 아마 신지호 위원이 제시한 의견 같은데요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朴俊宣 委員** 부대의견에 게임사업자, 이해관계자가……

○**신지호 위원**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위원장 우윤근** 부대의견을 정확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이 등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 보호단체 등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29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장관님, 합의를 다 보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법안의 취지가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었습니다. 수정안이 이러한 취지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기재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일부 하고 있지만 고급 과학기술 인재 석·박사 양성이 주 목적인 교육기관임을 감안해서 연구원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정의 의미가 문화기술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부대

의견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시면 지금 다 합의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재부하고도 이 부대의견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전담 기구를 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원만히 다 합의를, 아마 광주시장도 다 동의를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는 하여튼 장병원 의원님하고 기재부장관님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문광부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출신지가 호남인 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과 이 기관의 설치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여망을 해 왔었고. 특히 정부가 특별법으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지정을 해 놓고 그동안에 알맹이가 없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었습니다.

문화산업을 모든 국가들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적어도 이 CT연구원은 아주 진작 설립됐었어야 됐고,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취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광부 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본래 이 취지를 백분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불균형, 지역 간의 그런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는 비록 여건과 환경이 덜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전망과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문광부에서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 주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문광부에서 당초 의도하고 목표했었던 그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얼마든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분야라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문광부에서는 이렇게 했고 정부 차원에서, 특히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 그리고 행안부 차원에서 인원·인력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통해서 문광부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목표대로 꼭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단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부대의견은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충분히 지금 합의된 내용을 위원회, 전문위원님, 받아들여져 있지요?

○**전문위원 문광섭** 예, 완전히 합의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래서 부처 간에, 기재부와 문광부 간에 협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방금 장관께서 한 그 부대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4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48. 씨름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강승규·김성동·김세연·박보환·이경재·임해규·정해걸·정희수·조윤선·조전혁·주호영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47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씨름진흥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47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2조제2호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모두 65개에 해당하는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48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씨름진흥법안은 전통체육활동인 씨름 발전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씨름의 날 제정,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서 검토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지만 아직 처리 못한 법률안이 있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위원장 우윤근 오전에 관계 부처 간 협의 문제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9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물부 제1차관,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수석들, 또 법사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지금 했습니다.

물론 지식경제부장관이 좀 불만이 있으시죠?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뭐 51% 이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의견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통상교섭본부의 담당 국장도 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우윤근 장관님,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끝없이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쪽을 다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농촌, 농업 또 농림수산부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여야 원내수석들끼리 오전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는 게……

법사위원회에서 너무 정책적인 분야로, 사실은 법체계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냥 통과시켜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법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제 하는 건 더 이상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대로 양당이 합의를 했고 또 부처 간에도—지식경제부는 좀 불만이 있는 듯 합니다마는—어렵게 합의된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처 간 협의된 사항을 추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좀 잘 견뎌내십시오.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5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5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6시35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4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제49항, 제51항, 제52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호를 신설하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칙 조문의 정리 등 모두 15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13개를 수정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3항, 5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2조5호에서 유치원 및 학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

○노철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위원장 우윤근 노철래 위원님 하시지요.

○노철래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 제7조에 제한경쟁 근거를 두고…… 52항입니다, 의사일정 실행정수도 후속대책 연기·공주지역에 관련된 것.

국가계약법 제7조에 제한경쟁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동법 시행령 규칙 제25조3항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요,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노철래 위원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계약법의 개정도 없이 지역 제한을 무너뜨리는 특례규정을 둔다는 것은 규율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사업이 특정 지역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양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현재는 충청남도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충북이 포함이 됐거든요. 충북이 포함됐기 때문에 대전·충북·충남 업체로 확대를 해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해 주는 게 타당하고, 또 이제 범역이 넓어지면 더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데 질적인 면에서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

다는 점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간 10여 년 동안 지켜 오던, 건설업체의 거의 불문을처럼 지켜 오던 게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 지역 업체로 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계약법의 일종의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특례규정이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미 충청남도로 제한을 해 왔었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포함되는 범역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외를 두게 되면 계속 이제 이것하고 유사한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 계속 각 시·도 간 제한을, 또 예외규정을 계속 뒤야 되네? 비단 행정중심복합도시 하나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타 시·도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마다 그러면 예외규정을 뒤서 다 그걸 풀어야 되네, 그간 지켜 왔던 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건 이제 사업의 목적이란지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현재 충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참고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3년이 지나면 범위가 또 세종시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이걸 지역 간에 그간 좀 마찰이 있고, 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그간은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됐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게 3개 시·도 간에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닌데,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나?

○이용희 위원 간단하게 한다더니 뭐 그렇게 길게 하고 그래.

(웃음소리)

○노철래 위원 아니, 충남도지사하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소위 과정에서 그게 또 논란이 돼 가지고 위원장

